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집필인 | **김성주 한진옥 이예지 신소을 안혜미 주민재 정수경**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의료정책팀

우리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국가 또한 필요에 따라 일관된 정책 추진과 사업 방향성 제시를 위해 법령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이러한 장기계획 수립이 개별 법령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지만 모두 실제 수립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국민건강 증진 및 관리와 관계된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을 하나씩 살펴보면 적지 않은 수의 국가계획이 서로 연계 혹은 포함 수립하도록 규정되는 등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그 관계성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장기계획 간 위계나 추진체계가 모호하거나 내용이 중복된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금번 이슈브리핑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장기계획이 어떠한 체계를 가졌는지, 또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들은 어떠한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되짚어봄으로써 산발적으로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국가 장기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수립·개편 및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01 들어가며

우리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계획을 곧잘 세우곤 한다. 계획을 통해 추상적으로 제시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구체화할 수 있고, 자원관리나 예측가능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으며, 또 실제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개인뿐 아니라 국가 또한 같은 이유로 계획 수립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법률에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이

! 참조

1) 법제처(2022), 법령 입안·심사 기준

2) 손명세(2000),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법제, 2000년 7월호, 3-23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단기적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립주체, 수립사항, 수립시기 및 주기, 수립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¹⁾. 이를 통해 국가는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근거 법령에 따른 일관된 정책 추진 및 사업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효과적 정책 집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러한 국가계획들이 개별 법령에 의거 법제화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보건의료분야 법령을 떠올리면 쉽사리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려운데 이는 ‘건강’이 한 국가의 경제수준, 문화 등 사회 전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²⁾. 본 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검토에 있어서 그 범위를 건강증진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번 이슈브리핑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들의 현황을 근거 법, 수립주체, 수립주기 등과 함께 알아보고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장기계획들이 법령에 따라 실제로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되짚어봄으로써 산발적으로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국가 장기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수립·개편 및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02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현황

건강증진 및 관리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관련 법령 검토를 위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서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였으며, 검토 대상에서 환경(토양·대기·수질 오염 등)이나 산업안전, 건강보험(검진) 및 의료재정 등에 대한 장기계획들은 배제하였다. 더불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환경 변화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발표한 각종 계획 및 대책(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금연종합대책 등) 또한 제외하고 2023년 8월 현재 기준 근거 법령에 규정된 총 32건의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을 확인하였다[표1].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개괄

보건의료분야 기본법³⁾인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개별법과 그에 따른 장기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영역별로는 공공보건정책(11), 건강정책(10), 보건산업정책(2), 사회복지정책(4) 관련 장기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외에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같이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관련된 장기계획(5)이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들은 주로 5년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참조

3) 기본법은 특정 분야에서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이념, 원칙, 기본적인 방향 및 내용을 대략적으로 제시하며 타 법률의 모범 혹은 지침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국회법제실(2019), 법제이론과 실제).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 참조

5) 오유미(2017), 보건 의료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Weekly Issue, 39, 1-8

6) 국회법제실(2019), 법제이론과 실제

7) 보건복지부(2023), 필수 의료 지원대책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춘 4년으로 하고 있다⁵⁾. 또한 대다수의 법령에서는 장기계획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계획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움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꾀하기 위함이다⁶⁾.

보건 의료분야 장기계획 수립현황

보건 의료분야 장기계획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두 실제 수립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총 32건의 장기계획 중에서 26건(81.3%, 통합수립 포함)이 수립되어 진행 중이었으나, 수립예정인 2건(보건 의료발전계획·병상수급 기본시책⁷⁾), 4건은 아직 미수립(보건 의료인력 종합계획·전공의 종합계획 의료인수급 기본시책·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상태이다. 즉 보건 의료분야 장기계획 중 18.8%(6건)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이다.

미수립 장기계획 중 보건 의료발전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건 의료발전계획은 보건 의료의 전반적인 체계를 국가의 장기적 안목으로 제시하는 보건 의료분야 최상위 장기계획으로 볼 수 있지만 2000년 「보건 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립예정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인력 관련 계획도 모두 미수립 상태로 남아있다. 보건 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보건 의료자원으로 일컬어지는데, 보건 의료분야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보건 의료인력의 수급조절이나 질관리 측면에서 미래 환경 변화와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국가 주도의 장기적 접근이 없다면 국가 보건 의료체계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보건 의료분야 인력 관련 장기계획인 보건 의료인력 종합계획, 전공의 종합계획, 의료인수급 기본시책은 모두 수립된 바가 없다.

한편, 각 계획별 수립일정을 살펴보면 내용상 서로 연계되거나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계획들에 있어서도 수립시기가 2~3년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보건 의료분야 장기계획들이 그 목적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기보다는 개별 법령에 정해진 대로 분절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조

8) 김계현, 서경화(2019), 보건 의료인력지원법의 의미와 과제, 의료법학, 20(3), 211-233

표1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구분	No.	계획명	주기* (년)	수립일정('23 포함기준)											수립주체				근거 법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중앙	시도	시군구	공공단체**									
보건 의료 분야 정책 전반 (중앙)	1	보건의료발전계획	5																	〈수립예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1-1	보건의료발전 주요시책 추진방안	1																		○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
	2	사회보장 기본계획	5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2-1	사회보장 시행계획	1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2-2	사회보장 지역계획	-																		○	○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3-1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4	아동정책 기본계획	5																		○					아동복지법 제7조
4-1	아동정책 시행계획	-																		○	○				아동복지법 제8조	
공 공 보 건 정 책	5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	
	5-1	공공보건의료 주요시책 추진계획	1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	
	5-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1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 / 시행령 제5조 / 시행규칙 제17조	
	5-3	공공보건의료계획	1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8조	
	6	응급의료 기본계획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제13조의2	
	6-1	응급의료 시행계획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3조	
	6-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제13조의3	
	7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5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4조	
	7-1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1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4조	
	8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조	
	8-1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조	
	9	결핵관리 종합계획	5																	○					결핵예방법 제5조	
9-1	결핵관리 시행계획	-																		○	○			결핵예방법 제5조		
10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5																	○					희귀질환관리법 제6조		

표1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구분	No.	계획명	주기* (년)	수립일정('23 포함기준)											수립주체				근거 법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중앙	시도	시군구	공공단체*			
국민보건정책	11	병상수급 기본시책	5						〈수립예정〉							○				의료법 제60조
	11-1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													○			의료법 제60조	
	1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12-1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1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6조	
	13	전공의 종합계획	5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제5조	
	14	의료인수급 기본시책	-													○			의료법 제60조의2	
	15	환자안전 종합계획	5													○			환자안전법 제7조	
건강정책	16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5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16-1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1													○	○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17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5													○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17-1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1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18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5													○			구강보건법 제5조	
	18-1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1														○		구강보건법 제6조	
	18-2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	1														○		구강보건법 제6조	
	19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19-1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19-2	정신건강복지 시행계획	1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	
	20	자살예방 기본계획	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제7조	
	20-1	자살예방 시행계획	1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제8조	
	21	암관리 종합계획	5													○			암관리법 제5조	
	21-1	암관리 세부집행계획	1														○	○	암관리법 제5조	
	21-2	암관리 시행계획	1													○			암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22	치매관리 종합계획	5													○			치매관리법 제6조		
22-1	치매관리 시행계획	1													○	○	○	치매관리법 제6조		

표1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구분	No.	계획명	주기* (년)	수립일정('23 포함기준)											수립주체				근거 법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중앙	시도	시군구	공공단체**						
건강정책	23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5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
	23-1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1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
	2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
	25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																○				모자보건법 제5조
	25-1	모자보건사업 시행계획	-																○	○***			모자보건법 제5조
보건산업정책	26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제4조	
	26-1	보건의료기술육성 시행계획	1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약칭: 보건의료기술법) 제4조	
	2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5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제18조	
	27-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	1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해외진출법) 제18조	
사회복지정책	28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5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28-1	장애인정책 사업계획	1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29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5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 제6조	
	29-1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1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고독사예방법) 제7조	
	3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5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숙인복지법) 제7조	
	30-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1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노숙인복지법) 제8조	
	31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5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농어촌복지법) 제7조	
31-1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1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농어촌복지법) 제8조		
31-2	농어촌 보건복지 실천계획	1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농어촌복지법) 제8조		
정책전반 (지자체)	32	지역보건의료계획	4																○	○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 지역보건법 제7조	
	32-1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1																○	○		지역보건법 제7조	

*법령에 별도로 수립주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로 표시

**공공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의원급 기관 제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명기된 경우 수립주체를 시도단위로만 표시(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로 상세하게 수립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03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추진체계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검토

- ! 참조**
- 9) 오유미, 조인성(20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30(2), 142-150
- 10)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 11)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 12) 오유미, 조인성(20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30(2), 142-150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위계와 전반적인 추진체계 검토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추진기구 및 계획 간 관계를 체계도로 검토하였다.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별 법령에서는 계획의 심의·확정을 위한 추진기구의 위원장을 대통령, 국무총리, 부처의 장관·청장 혹은 차관으로 명시하고 있다⁹⁾. 위원장이 대통령인 장기계획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의 성격을 가진 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 있으며,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¹⁰⁾¹¹⁾하도록 법상에 명기되어 있어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인가가 필요하다. 범부처적 협조가 요구되는 계획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데¹²⁾, 자살예방 기본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해당된다. 소관부처의 주요 역할에 해당하는 계획 중 장관·청장을 위원장으로 둔 장기계획이 5건,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상에 명기한 계획은 8건이 있으며 그 외에는 위원 중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추진기구를 규정하지 않은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진기구 위원장의 위상만으로 장기계획의 위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위원장이 정부조직 상 상위에 속한다고 해서 해당 계획이 타 장기계획들을 내용상 모두 포괄하거나 법령상 연계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전체적 추진체계 검토를 위해 법상에서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장기계획 간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표2].

표2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간 연계/포함 수립 관계

장기계획명	연계/포함 수립하도록 규정된 장기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상수급 기본사책 한자언론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보건의료 취약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인수급 기본사책 지역보건의료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의 종합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발전계획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핵관리 시행계획 정신건강복지 시행계획* 임관리 세부집행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보건의료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 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포함(대체)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장기계획

**포함(대체) 수립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장기계획

! 참조

- 13)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 14)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 15)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의료법 제60조의2
- 16)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제5조
- 17)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환자안전법 제7조
- 18)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
- 19)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지역보건법 제7조
- 20)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
- 21)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지역보건법 제7조
- 22)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농어촌복지법) 제9조(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연차별 계획이나 내용상 중복되므로 장기계획에 함께 표기하였음)
- 23)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결핵예방법 제5조
- 24)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
- 25)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
- 26)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27) 질병관리청(2023), 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 28)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4조
- 29)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암관리법 제5조
- 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정판
- 31)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
- 32)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33)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제13조의2
- 34)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 35)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앞서 살펴보았듯, 대부분의 보건의료분야 법령에서는 중앙단위의 장기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중앙부처에서 작성한 장기계획 수립 안내서 등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중앙 단위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1)병상수급 기본시책³⁾, (2)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¹⁴⁾, (3)의료인 수급 기본시책¹⁵⁾, (4)전공의 종합계획¹⁶⁾, (5)환자안전 종합계획¹⁷⁾, (6)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¹⁸⁾, (7)지역보건의료계획¹⁹⁾, (8)사회보장 기본계획²⁰⁾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 취약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도록 정하고 있는 중앙단위 장기계획은 (1)보건의료발전계획, (2)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3)사회보장 기본계획²¹⁾, (4)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추진계획·실천계획²²⁾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시군구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수립 시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기계획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혹은 포함(대체)하여 수립하도록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연계하도록 규정된 단기계획으로는 (5)결핵관리 시행계획(결핵관리 종합계획)²³⁾, (6)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²⁴⁾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계획으로는 (7)정신건강복지 시행계획(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²⁵⁾, (8)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²⁶⁾이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대체)하도록 하는 계획에는 (9)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²⁷⁾, (10)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²⁸⁾, (11)암관리 세부집행계획(암관리 종합계획)²⁹⁾, (12)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³⁰⁾이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1)보건의료발전계획, (2)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하고, (3)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³¹⁾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것을 관계법령³²⁾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 타 장기계획과의 관계성을 고려한다면 중앙단위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외하고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장기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응급의료 기본계획³³⁾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³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³⁵⁾을 연계하도록 하는 등 전체적으로 장기계획 간 체계가 매우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상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추진체계는 전반적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계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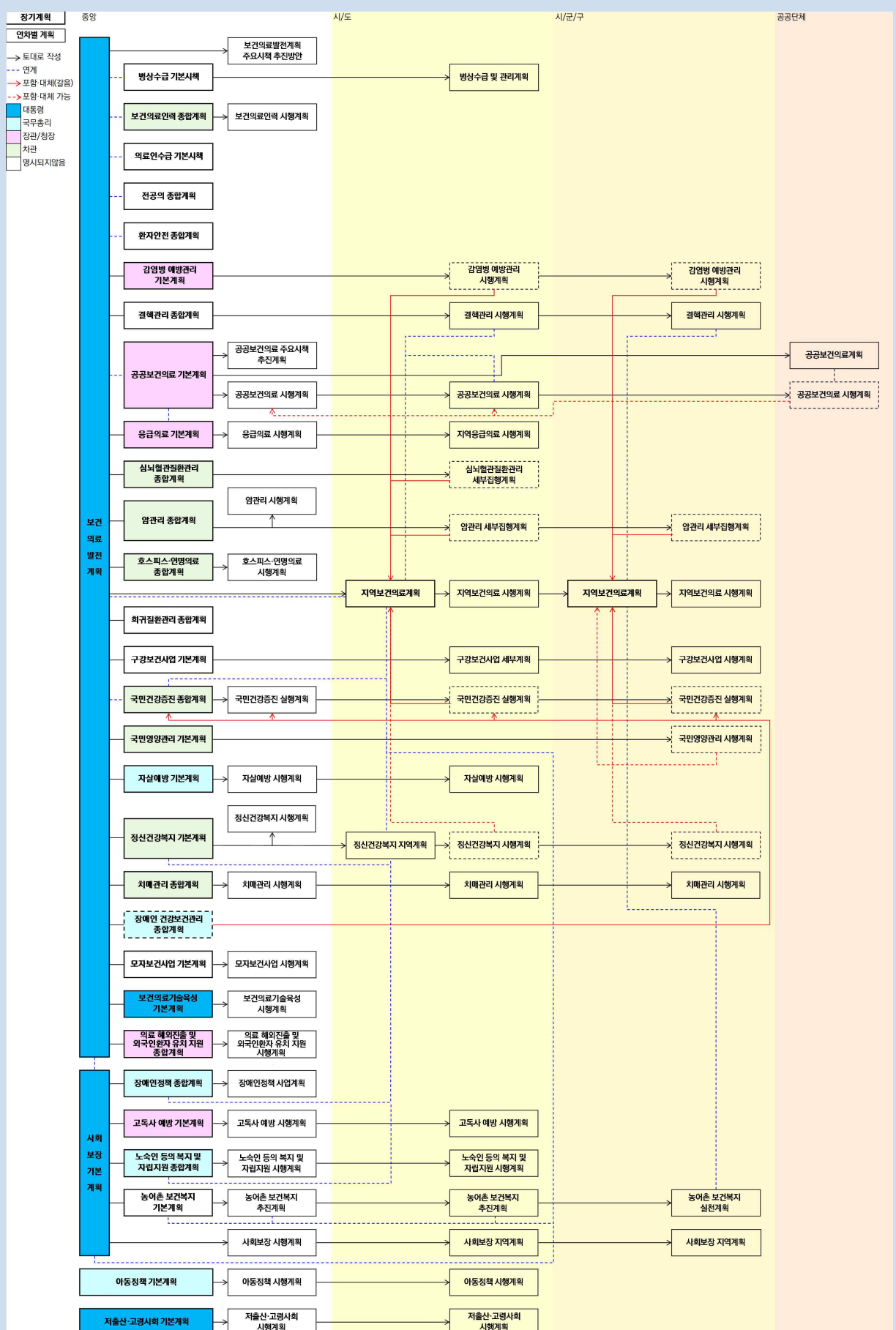
! 참조

36) 오유미, 조인성(20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30(2),
142-150

록 하며, 타 법령에서 규정된 장기계획과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계획의 연계를 요구하는 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계획(전공의 종합계획·의료인수급 기본시책·환자안전 종합계획)도 혼재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도 시도·시군구 단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하고 시도는 제외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만 단기계획을 세우도록 한 경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도 있어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체계나 지방자치단체별 역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³⁶⁾.

그림1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체계도



※ 보건의료발전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기구 위원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최종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됨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범주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내역을 나열적으로 확인하고 수립현황과 추진체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데 이어서 각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어떠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그림2]. 앞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계획들은 매우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지며 그 개수 또한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장기계획을 내용상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범주를 한눈에 파악하고, 서로 연계될 필요가 있거나 포함관계에 놓인 장기계획은 없는지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황을 내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 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반(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보건의료 발전의 목표 및 방향, 자원관리, 서비스 제공 등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건의료분야 최상위 장기계획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³⁷⁾,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구관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 부문 포함이 불가피하므로 모두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같은 위상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계획들은 내용상 크게 공공보건정책·건강정책·보건산업정책·사회복지정책 관련 장기계획으로 구분³⁸⁾할 수 있다.

• 공공보건정책

공공보건정책 관련 장기계획 중 가장 포괄적인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방향성과 자원관리·전달체계·취약 부문·위기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³⁹⁾되어 있다. 공공보건정책 영역에서도 세부적으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결핵관리 종합계획,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필수요로 관련 계획으로 구분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전공의 종합계획, 의료인수급 기본시책은 의료자원관리 관련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 환자안전 종합계획 또한 공공보건정책 영역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각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장기계획 중에서도 결핵관리 종합계획은 감염병에 결핵이 포함되므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두 계획 간의 연계나 포함수립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도 전공의 종합계획과 의료인수급 기본시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건강정책

건강정책 관련 영역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가장 포괄적이며, 그 외 세부적

! 참조

37)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

38) 각 영역의 범주 명칭은
보건복지부 조직명을 차용, 하위
각 장기계획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근거 법 혹은 실제 수립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39)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

으로는 건강증진 관리(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질환관리(암관리 종합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호스피스·연명치료 종합계획), 인구집단관리(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관련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 이슈와 자살 예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에서는 추진전략으로 자살 예방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미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자살 예방 기본계획(5차, '23~'27)이 수립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별 법령에 근거한 장기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산업정책 및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은 보건산업정책 관련 장기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사회복지정책 관련 장기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건강정책 영역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 계획과 내용상 연계될 필요가 있고 두 계획의 심의기구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동일함⁴⁰⁾에도 이러한 관계에 대한 명시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반(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⁴¹⁾ 중앙차원의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을 토대로 하여 개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모든 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수립하는 시도·시군구의 장기계획이므로 보건 의료분야 장기계획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서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과제 작성방향으로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사업내용⁴²⁾을 포함함과 동시에 시도는 지역응급의료계획, 병상수급계획,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장기계획과는 더욱 분명한 상호관계가 있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장기계획들을 연계 혹은 포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할 것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은 아니기에 내용상 유관한 계획을 연계하거나 포함하도록 수립 지침에서 제시하면서도 중복적인 내용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과는 별도로 2022년 경기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⁴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것을 별도 지침으로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⁴⁵⁾.

이렇듯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 참조

40)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41)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지역보건법 제1조

42)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정신건강 관리, 지역주민 질병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지역보건법 제11조).

43) 보건복지부(201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44) 경기일보(2022.05.25.), 경기도, '응급환자 안심 경기' 구현 나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25580217>)

45) 보건복지부(2022), 2023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침

! 참조

46) 오유미, 조인성(20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30(2), 142-150

그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통합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에도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어 개별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수립과 성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친 행정부담과 업무가 과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⁴⁶⁾.

그림2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분야별 체계도



04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한계 및

과제

! 참조

47) 김소윤, 이동현(2020),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과 방향, 의료정책포럼, 18(4), 14-18

48) 의협신문(2022.03.1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직원 임금 추가...“과도한 규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29>)

! 참조

49) 조아진(2018),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발전방향, Khealth Issue, 51, 1-8

50) 자남주(2021), 워드 코로나 시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미와 발전 및 개선 방안, 건강정책동향, 32, 1-7

이상으로 살펴본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현황에서 가장 주요한 문제는 근간이 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이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것이 부재한 상태에서 환자안전 종합계획이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은 수립되어왔으며, 심지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음에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아직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보건의료분야 이슈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가적 합의나 장기계획 간의 연계성 없이 개별적, 분절적으로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이 난립되어 있어⁴⁷⁾,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이 절실하다.

보건의료인력 관련 계획이 전무하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 크게 불거지고 있는 필수의료 진료기피 및 지역불평등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부각된 이 시점에 보건의료인력의 공급방안과 근무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보건의료인력을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⁴⁸⁾. 따라서 국민건강 보장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련 장기계획(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전공의 종합계획·의료인수급 기본시책)들이 그 중요성과 내용상 유사성을 고려해 통합수립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추진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장기계획 간의 위계를 법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고 추진기구 위원장의 위상이나 개별 장기계획의 내용으로 유추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장기계획 간의 우위나 포함관계,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은 장기계획의 중복과 분절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 수립에만 많은 자원이 소모되어 계획의 이행이나 성과관리 측면은 약화될 소지가 있다⁴⁹⁾. 결국 장기계획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 간 위계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

시도·시군구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도 장기계획 실행의 효율성과 결과 피드백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확인하였듯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연차별 단기계획과 대부분 이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가 일관되지 않고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과 위상 또한 모호하다. 일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 단위에서 비슷한 내용의 계획을 시군구와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개인별 건강관리(만성질환, 운동 등)와 같은 내용이 시도 단위에서 제시되기도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미시적인 사안보다 병상 관리나 지역 공공의료체계 등 좀 더 거시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⁵⁰⁾.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 단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장기계획을 토대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계획 이행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에 집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장기계획 간 통폐합이 선행되어 장기계획 수립의 효율화 및 연결성

! 참조

51) 오유미, 조인성(20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30(2), 142-150

52) 이현지 등(2019), 국내 보건복지 장기계획 수립 현황,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9(3), 368-373

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⁵¹⁾.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전반적인 체계 재정립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수립-시행-평가의 환류가 연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⁵²⁾. 국가 장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은 수립 이후 성과관리를 통해 차기 계획에 이를 유기적으로 반영해야 의미 있는 선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법령을 살펴보면 성과관리(실적 보고) 및 평가에 대한 사안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한 계획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획도 있었으며, 법제화하였더라도 실적 제출에 대한 시기까지 상세하게 수립된 규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 국가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립 및 평가 시기를 조율하고 재수립한다면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가 적절하게 환류될 수 있고 국민건강 보장 및 보건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해질 수 있다.

05 나가며

금번 이슈브리핑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의 현황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산발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을 전체적으로 되짚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분야 국가계획은 대부분 중앙-시도-시군구의 연계를 기본으로 장기계획 수립과 함께 연차별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그러나 현황을 검토해 보았을 때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모든 장·단기계획의 수립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으며 특히 최상위 기본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법제화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립되지 않았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 간 위계가 명확하지 않고 추진체계가 제각각이었으며 각 계획이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수립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이슈의 우선순위 합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장기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개편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계획과 그에 따른 시도·시군구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효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립시기 조율을 통해 연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평가와 피드백 체계 및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참조

53) 나백주(2010),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과 지침 소개, 농촌의학·지역보건, 35(2), 195-203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 해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업무 중 하나인데⁵³⁾, 최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책임의료기관 제도, 공공병원 확충 등의 근간

또한 지방자치로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방분권화 흐름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불거진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 부문,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의 환경 변화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의 핵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장기계획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앞서 짧게 언급하였듯,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유사한 내용을 시도·시군구 모두 작성하게끔 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미시적인 부분이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시되거나 거시적인 시각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개인별 건강관리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한 계획을 세우고, 광역자치단체는 성과관리 지표로서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나 흡연율과 같은 미시적인 지표를 내세우기보다는 시군구 단위의 공공의료기관과 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고민과 응급의료·병상수급·공공병원 설립 등 의료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⁵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적 운용으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조

54) 지남주(2021),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미와 발전 및 개선 방안, 건강정책동향, 32, 1-7

한편,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이슈(필수의료, 소아의료체계, 비만관리, 중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단발성으로 장기 대책/시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수요 변동으로 떠오르는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및 체계의 공백을 메꾸고 국민건강 증진 및 보장을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일보(2022.05.25.), 경기도, '응급환자 안심 경기' 구현 나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525580217>)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결핵예방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농어촌복지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심뇌혈관질환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암관리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제1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의료법 제6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지역보건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지역보건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지역보건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환자안전법 제7조

국회법제실(2019), 법제이론과 실제

김계현, 서경화(20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미와 과제, 의료법학, 20(3), 211-233

김소윤, 이동현(2020),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필요성과 방향, 의료정책포럼, 18(4), 14-18

나백주(2010),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방향과 지침 소개, 농촌의학·지역보건, 35(2), 195-203

법제처(2022), 법령 입안·심사 기준

보건복지부(201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보건복지부(2022), 2023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침

보건복지부(2023), 필수의료 지원대책

손명세(2000), 보건의료법제의 변천, 법제, 2000년 7월호, 3-23

오유미(2017),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Weekly Issue, 39, 1-8

오유미, 조인성(202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건강증진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30(2), 142-150

의협신문(2022.03.1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직원 임금 추가... "과도한 규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29>)

이현지 등(2019), 국내 보건복지 장기계획 수립 현황,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9(3), 368-373

조아진(2018),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발전방향, Khealth Issue, 51, 1-8

지남주(2021),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미와 발전 및 개선 방안, 건강정책동향, 32, 1-7

질병관리청(2023), 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2),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정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보건의료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해당 이슈브리핑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인 | 한진옥(보건의료정책팀 책임연구원) 문의 | 031-738-0281